

#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 규정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

## 1. 제안이유

방위사업청의 「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」 제정 사항, 감사결과 제도 보완 필요사항 반영 및 정부 품질보증 내실화와 명확화를 위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방위사업청 「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」 제정 관련 사항 반영

\* 기존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6개 규정 통합 및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사항 반영

#### 1) 신설사항

- 양산계획수립 시 품질관련 사항검토지원, 계약 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품질 요구조건 검토 사항 추가(제17조, 제21조)
- I형 품목의 품질문제 반복발생 시 품질보증형태 변경절차 추가(제8조)
- 위조부품 관리방안 및 제조물책임 사항 추가(제14조, 제25조, 제34조)
  - \* 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항목 추가, 규격불일치품 처리 시 위조부품 관리 등
- 품질보증형태 I형의 경우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생략 가능(제20조)
  - \* 위험평가 결과 현장 정부품질보증이 필요한 경우 제외
- 품질개선 결과 년1회 방위사업청 제출절차 추가(제42조)

#### 2) 변경사항

- 군수품 품질보증기본계획 명칭 및 수행주기 변경 사항 반영(제10조)
  - \* 군수품 품질보증기본계획 →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, 3년 → 5년
- 용어변경 사항 반영(제4조, 제12조, 제14조, 제16조, 제19조, 제21조, 제24조, 제29조, 제33조, 제39조, 제40조, 별표 제1-1호, 별지 제3-1호)
  - \* 품질관리= 품질보증 + 품질경영, 품질경영시스템 → 품질경영체제
- 수출품 품질보증대상 추가 및 용역비 산정기준 구체화(제45조, 제47조)
  - \* 외국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국과연, 기품원 시험시설에서 시험이 필요한 화약류
- 용어정의 변경 사항 반영(별표 제1-1호)

## 나. 관련 규정 개정 사항 반영

- 1) 규정명 변경사항 반영(제6조)
  - \* 군사보안업무훈령 → 국방보안업무훈령
- 2) 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(제43조)
  - \* 조항번호 변경, 일부용어변경(초도양산 → 최초양산)
- 3) 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에서 「군수품 조달관리규정」 분리 사항 반영(제49조)

## 다. 자체 감사 지적 및 방사청(계약관리본부) 요청 사항 반영

- 1) 정부품질보증활동 결과 업체 품질증빙자료에 기록유지 가능 사항 삭제(제23조)
  - \* 업체 보관 정부품질활동결과(업체증빙자료 서명 후 보관)에 대해 부서장 결재 및 관리 필요
- 2) 국가계약법 제 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차년도 이후 계약분에 대해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요청(제20조)
  - \* 2차 년도부터는 신규작성 대신 전년도 계획에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 팀장결재 후 변경사용

## 라. 품질보증활동 내실화 및 명확화

- 1) 규정적용 범위 명확화 및 적용범위 외 업무 삭제(제2조, 제5조)
  - \* 우리원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업체 삭제 및 품질경영업무로 한정
- 2) 규정의 내용 명확화(문구보완, 구성변경 및 오류수정) (제5조, 제8조, 제20조)
- 3)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 내실화 및 활용확대(제9조, 제19조)
  - \* 기존 외부기관 이용조사를 전문센터에서 조사 수행으로 변경  
(외부기관 이용 시 업체협조 미흡, 객관성 부족 등)
  - \* 위험식별 시 품질수준조사결과 활용
- 4)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범위 구체화(제18조)
  - \* 군수품 조달관리규정에 따라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으로 범위 명시  
(일부 업체에서 품질과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승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)
- 5) 위험도 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품질보증 확인범위 및 심도 가감 조절가능 명시(제20조)
  - \* 현행규정은 조절 대상 및 범위 불명확, III형만 품질경영체제 및 프로세스 검토 생략 가능
- 6)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에 대한 품질경영체제평가 시 평가범위 구체화(제21조)
  - \* 인증심사와 중복요소 최소화를 위해 심사결과 취약요소(부적합, 관찰사항)만 확인

7) 업무수행 주관 및 기준 등 명확화(제14조, 제28조)

- \* 업체 품질보증 활동기준 명확화(규격), 이화학시험 및 측정사항 적용범위를 정부품질보증 시로 한정, 샘플링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추가

바. 기타사항

1) 국방품질정보체계관련 용어 통일(제14조, 제21조, 제22조, 별지 제3-1)

- \* 품질경영문서체계, 품질보증활동관리시스템, 품보활동관리정보체계 →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

2) 오기 수정(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○ 하반기(12월) 규정 개정 계획

- 신설사항

- 개발단계 품질관리 절차

- 보완사항

- 위험도평가, 프로세스리뷰
- 기타 업무효율화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
- 품질관리, 품질경영, 품질보증 개념 반영 등